

금 전 소 비 대 차 계 약 서

공증 · 내용증명 제출용

채권자와 채무자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, 그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 통을 작성한다.

■ 채권자

성명		주민등록번호	
주소			
연락처		이메일	

■ 채무자

성명		주민등록번호	
주소			
연락처		이메일	

■ 연대보증인 (해당 시)

성명		주민등록번호	
주소			
연락처		이메일	

■ 계약 조항

제 1 조 (대여금)	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금 원정(₩)을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음을 확인한다.
제 2 조 (대여일)	20 년 월 일 · 교부방법 ☐ 계좌이체 ☐ 현금 ☐ 기타
제 3 조 (변제기)	20 년 월 일까지 원금 전액을 변제한다.
제 4 조 (이자)	연 %로 하고 매월 일에 지급한다. ☐ 무이자
제 5 조 (지연손해금)	변제기 경과 시 연 %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.
제 6 조 (기한이익 상실)	채무자가 ① 이자를 2 회 이상 연체한 때 ② 압류·가압류·경매 신청을 받은 때 ③ 회생·파산을 신청한 때에는 최고 없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전액을 변제한다.
제 7 조 (강제집행 인낙)	채무자는 본 계약상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.
제 8 조 (관할법원)	본 계약에 관한 분쟁의 관할법원은 지방 법원으로 한다.
제 9 조 (특약사항)	

20 년 월 일

채권자 (빌려준 사람)	성명 (인)	서명 또는 날인
--------------	--------	----------

채무자 (빌린 사람)	성명 (인)	서명 또는 날인
연대보증인	성명 (인)	해당 시

공증사무소 제출 시 준비물

- 당사자 신분증 (대리인이 갈 경우 위임장 + 인감증명서 + 대리인 신분증)
- 본 계약서 2 통 이상 · 도장(인감 또는 서명)
- 제 7 조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있어야 공정증서로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.
- 공증 수수료는 채권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방문 전 확인하세요.